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6. 22.(화) 10:00	배포일시	2021. 6. 22.(화) 08:00
담당과장	세제실 산업관세과 이주현 (044-215-4430)	담당자	김종락 사무관 jonglak@korea.kr

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

- 정부는 '21.6.22.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'21.12.31.까지 0%로 인하하는 「할당관세* 규정 (대통령령) 개정안」을 의결하였습니다.

* 할당관세(관세법 §71) :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

- 이는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(0%)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.
-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, 총 3만 6천톤에 대해 금년 말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.
-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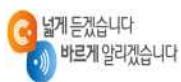
<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>

구 분	계란		노른자		전 란*		난백알부민**	
	신선	조제	가루	액(液)	가루	액(液)	가루	액(液)
기본세율(%)	27	27	27	27	27	30	8	8
할당세율(%)	0	0	0	0	0	0	0	0
적용물량(천톤)	18.0	0.9	0.6	2.6	2.1	7.2	1.6	3.0

*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·냉동 계란 ** 흰자 가루 등에서 추출·가공한 단백질

-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
 - 지난 6월 2일 「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」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,
 -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.

- 이번 조치로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(기본 8~30% → 할당 0%)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되어
 -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